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개편 등 〉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3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선정기준액 산정 방식 개편	4
가. 개정안의 내용	4
나. 검토의견	5
2.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3
3.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개편 등	17
가. 개정안의 내용	17
나. 검토의견	21
4.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24
가. 개정안의 내용	24
나. 검토의견	28
III . 관계 기관 의견	30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2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7. 29.
- (3) 회 부 일 : 2026. 7. 30.

나.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확실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투입 예산대비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노인 진입 계층의 자산과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물가 및 소득인상률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임.

하지만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목표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노인층에 정액성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의
차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 저소득자
특례 등 여러 산정 규정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급여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제도 운영상 복잡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생활수준과 제도상
수급 자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되는 이른바 ‘줬다 뺀 기초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기초연금이 가장 빈곤한 노인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2027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기초연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최대액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하후상박식 급여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소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이 되도록 하고,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실질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배제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선정기준액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지급 제외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 2)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개편하고,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 최대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함(안 제5조).
- 3)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규정을 폐지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4)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26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선정기준액 산정 방식 개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¹⁾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생 략)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율(이하 “기초연금 수급률”이라 한다)이 ‘70% 수준’이 되게끔 선정기준액을 정하도록 하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참고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이하 “단독가구”라 한다)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이하 “부부가구”라 한다)의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2)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각각 월 소득인정액 기준 247만원과 395만 2천 원임.

□ 개정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각각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선정기준액의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노인가구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구 소득 분포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노인가구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기초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 수준이었으나, 그 비율은 점차 상승하여 2026년 현재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5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에 따르면, 최근 출생한 세대일수록 빈곤율이 낮고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 개선되어왔다고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 중위소득: 2015~2026 >

(단위: 원, %)

구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비율	
	단독(A)	부부(B)	1인(C)	2인(D)	A/C	B/D
2015	930,000	1,488,000	1,552,337	2,660,196	59.9	55.9
2016	1,000,000	1,600,000	1,624,831	2,766,603	61.5	57.8
2017	1,190,000	1,904,000	1,652,931	2,814,449	72.0	67.7

구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 준 중위소득		비율	
	단독(A)	부부(B)	1인(C)	2인(D)	A/C	B/D
2018	1,310,000	2,096,000	1,672,105	2,847,097	78.3	73.6
2019	1,370,000	2,192,000	1,707,008	2,906,528	80.3	75.4
2020	1,480,000	2,368,000	1,757,194	2,991,980	84.2	79.1
2021	1,690,000	2,704,000	1,827,831	3,088,079	92.5	87.6
2022	1,800,000	2,880,000	1,944,812	3,260,085	92.6	88.3
2023	2,020,000	3,232,000	2,077,892	3,456,155	97.2	93.5
2024	2,130,000	3,408,000	2,228,445	3,682,609	95.6	92.5
2025	2,280,000	3,648,000	2,392,013	3,932,658	95.3	92.8
2026	2,470,000	3,952,000	2,564,238	4,199,292	96.3	94.1

< 출생세대별 빈곤율, 저소득-저자산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및 월평균 수급액 >

(단위: %)

구분	빈곤율			저소득-저자산 비율 ¹⁾			국민연금 ('24. 9.)	
	'19	'20	'21	'19	'20	'21	수급률	월 평균 수급액
'30후 生	56.2	55.4	56.3	27.5	28.1	27.9	26.3	24만원
'40전 生	54.4	51.2	51.3	15.4	15.8	15.5	47.9	27만원
'40후 生	42.5	42.2	44.5	9.5	9.8	9.6	56.3	37만원
'50전 生	26.5	27.3	27.8	8.3	8.9	8.4	54.7	49만원
'50후 生	17.8	18.4	18.7	- ²⁾	7.5	7.0	61.1	60만원

주 1) 저소득-저자산 비율이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임.

2) 1950년대 후반 출생 세대는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함.

자료: 김도현·이승희,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KDI, 2025년 2월.

□ 아울러 현행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70% 수준)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65세 이상 인구 증가가 곧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의 증가로 이어져 그 비용을 분담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데이터처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3)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은 2050년경 약 1,891만명(중위추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요가 연평균 5.5%씩 증가하여 2035년에는 총 44.4조원(국비 37.5조원 + 지방비 6.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GDP 대비 기초연금 사업비 비율은 약 0.9%이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그 비율은 2085년 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장래인구추계(2023): 2022~2072년(중위추계) >

(단위: 만명, %)

구분		'22	'23	'24	'25	'30	'40	'50	'60	'72
인구	계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0-14	595	571	549	526	416	388	375	293	238
	15-64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65+	898	944	994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자료: 국가데이터처(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기초연금 재정전망: 2026~2035년 >

(단위: 조원)

구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총 계	27.5	29.3	31.2	32.8	34.6	36.5	38.3	40.2	42.3	44.4
국비	23.3	24.7	26.4	27.7	29.3	30.8	32.3	33.9	35.8	37.5
지방비	4.3	4.5	4.8	5.1	5.4	5.6	5.9	6.2	6.6	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초연금 재정추계: 2025~2085년 >

(단위: 조원, %; 경상가 기준)

구분	'25	'35	'45	'55	'65	'75	'85
총소요액	24.3	53.7	95.6	146.5	208.9	270.8	341.4
GDP 대비	0.9	1.4	1.9	2.3	2.7	2.9	3.0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각각 1인 가구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현행 대비 축소될 수 있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약 76.2%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2025) >

(단위: 만명)

구분	합 계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수급	2인 수급
전체 수급자	706.6	337.8	54.7	314.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38.5 (76.2%)	292.4 (86.6%)	31.6 (57.8%)	214.5 (68.3%)

자료: 보건복지부

2.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제3항³⁾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

3)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현행	개정안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개정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①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②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참고로,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 5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면서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4)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는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기준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가 기초연금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실제 경제적 생활 여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 2015년 6월 법률 제13387호로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과

5)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같은 해 12월 법률 제13561호로 공포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이 종전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부담률은 각각 인상된 반면,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퇴직연금액 비중은 인하되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경되는 등 직역연금의 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이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만으로 현재의 실질적인 경제적 생활 여건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크지 아니하다고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월 급여액이 25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약 44.7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약 59.4만명) 대비 약 75%에 이르는 하지만, 월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2,020명)도 있는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동질의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25. 12월 기준) >

(단위: 명, 원)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수급자	131	1,889	20,116	61,557	63,664	447,002
평균 급여액	391,670	834,287	1,359,716	1,763,789	2,264,895	3,357,677

주: 분할연금·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및 비공상 장애연금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을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사유인 직역연금의 급여 수준, 국민적 정서, 국가의 재정부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둘째,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안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와 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1949년 7월 1일 이후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등을 그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김선민의원(제4828호), 김동아의원(제16484호), 윤준병의원(제19356호), 문진석의원(제20063호) 및 백선희의원(제20388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개편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되,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6)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미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연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	$\begin{array}{rcl} \text{1인 가구} & &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기준 중위소득의} & & \text{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text{100분의 40에} & - & \frac{-10\text{만원}}{\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times \text{소득인정액} \\ \text{해당하는 금액} & & \text{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nd{array}$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략)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삭 제>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5조에</u>----- ----- ----- ----- ----- ----- ----- ----- ----- ----- ----. <삭 제>

현행	개정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④ 제2항----- -----.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5년마다----- ----- ----- ----- ----- -----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기준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세부 절차

현행	개정안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등에----- -----. 제26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 금지)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지난 15년간 66세 이상인 사람 중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하 “노인빈곤율”이라 한다)은 점차 하향하는 추세로 나타나지만,⁷⁾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부조를 강화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표적효율(target efficiency)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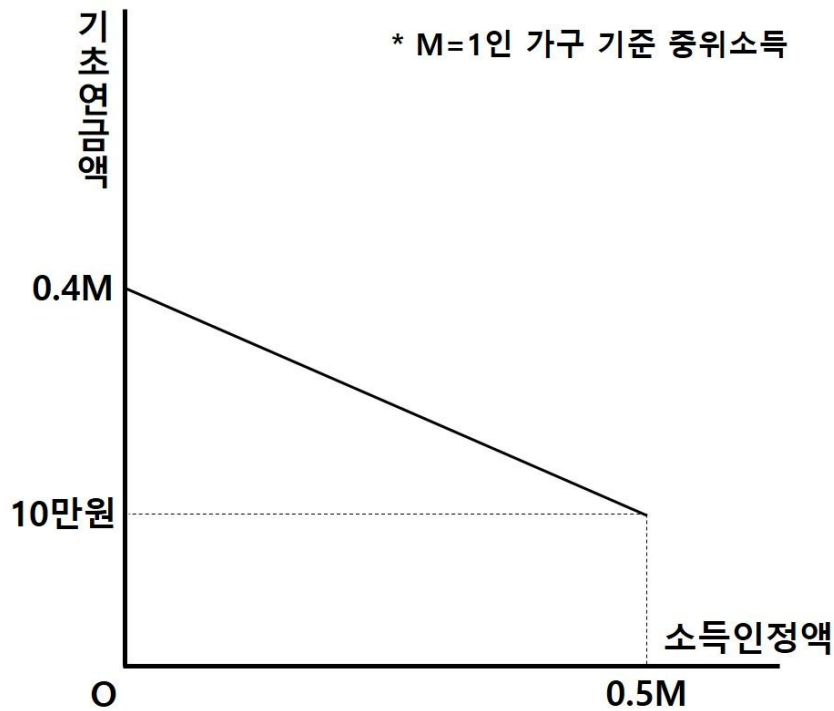
-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개편함으로써 공적부조를 더 필요로 하는 빈곤층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노인 빈곤 문제에 관한 기초연금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2026년도 기준연금액은 2025년도 기준연금액(342,510원)에 2025년의 전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한 349,700원으로 결정되었음.

7) (노인빈곤율) ('11) 47.9% → ('16) 44.8% → ('21) 39.3% → ('23) 39.8% → ('24) 37.7% (자료: 국가데이터처)

< 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기초연금액의 상한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될 경우 개별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기초연금의 하후상박형 개편이나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재정소요 및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개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켜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규정⁸⁾하고 있는 데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이 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 제26조의2는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액 상승분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저소득 노인의 빈곤 개선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측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포괄적 논의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다른 법률(「기초연금법」)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③ (생략)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	제5조(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begin{array}{r} \text{1인 가구} \\ \text{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40에} \\ \text{해당하는 금액} \end{array} - \frac{\begin{array}{r}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 10만원 \end{array}}{\begin{array}{r}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nd{array}} \times \text{소득인정액}$

현행	개정안
<u>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u>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u> <u>1. 기준연금액</u> <u>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u>	

현행	개정안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	<삭 제>

현행	개정안
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략)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	<삭 제>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 ----- ----- -----

현행	개정안
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하 “A값”이라 한다. 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과 공적부조인 기초연금제도 간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제기될 수 있는 형평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생애에 걸쳐 성실하게 기여한 결과로 기초연금 급여액이 삭감되는 것이 다소 불공정하다는 관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음.

□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개별 기여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공적부조의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의 운영 기제가 서로 다른 점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분담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기능 확대를 전제로 그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계획 하에서 도입된 공적부조라는 당초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황명선의원(제4608호) 및 김선민의원(제4828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Ⅲ.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개정안의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0원인 단독가구는 2026년 기준 월 1,025,695원을 수급하게 되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6